

「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983호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한 서울 생활과 권익보호·고충해결을 목적으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로서,

○ 외국인 노동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전문성과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○ 주요 위탁 사무는 노무, 법률, 각종 생활 상담과 한글, 컴퓨터 교육, 의료지원, 기타 다양한 문화체험 등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,

○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